

10. 建設業法施行規則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13호 1997. 8. 2

주 요 골 자

- 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및 건설전담부서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경력을 양수인의 건설업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 제3항 및 제22조제3항).
- 나.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방법·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시공능력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반건설업자가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22조 내지 제24조, 별표 1 및 별표 2).
- 다. 일반건설업자는 종전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30 이상을, 공사예정금액이 7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2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30이상을,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2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함(제27조제1항).
-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4개월치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마. 현재 건설업체진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건설업체 진단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단순화함(제33조 및 부칙 제2조)

개정이유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체진단규칙을 폐지하여 건설업관련 법령체계를 단순화하며,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방법·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시공능력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건설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상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세

- 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③ 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제 3조(외국인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면허신청서 또는 제14조제1항의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제 4 조(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①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첨부서류의 보완)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 6 조(실제확인) 지방국토관리청장 또

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건설공사용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 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상황

제 7 조(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에는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임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8 조(건설업면허 등의 공고)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갱신) 연월일
2. 면허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 9조(건설업면허증 등의 교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면허를 갱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건설업 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회수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1.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송계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또는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대한 설비공사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일반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공능력

3.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일반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일반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 10 조(건설업면허대장 및 전문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전문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 11 조(임원 등의 범위) ①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 · 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자
2. 건설업(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 · 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

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 · 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6.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투자기관
 - 라. 각 협회
 - 마.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
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한 임원의 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한 경
력과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복합된 경력인 경우에는 건설관련분야
에 종사한 기간에 10분의 7을 곱한 기
간을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
면허증 등의 교부) 제5조 · 제6조 · 제
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임업협동조합
법 제7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
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3 조(건설업면허내용 등의 개시) 건
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제1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
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
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
다.

제 14 조(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
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
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
록신청서에는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서류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5 조(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증 등의 교부) ① 제4조 내지 제
6조의 규정은 전문건설업등록신청의
심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건설업등
록증과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문건설
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
수첩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6 조(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자의 변경사항의 신고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
자의 변경사항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
며, 건설업자의 변경사항신고서는 별

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변경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 ·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한다)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3.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임원 또는 지배인을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으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 나.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

수한 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업자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건설공사착공신고의 통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착공 신고의 내용 중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착공 신고의 통보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건축공사착공통보서에 의한다.

제 18 조(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양도인이 각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각 공제조합의 의견서

4. 건설공사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설공사(하자보수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한한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보수의무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용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현황
7.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④ 영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도인가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제 19조(법인의 합병인가신청 등)
 - ①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법인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
인합병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설
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인합병인가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제 20 조(건설업의 상속인가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상속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건설업상속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
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상속인가의 공고는 일간신문, 건
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속인가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제 21 조(건설공사대장) 법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 22 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영 제
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
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한 경우 양수
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
이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상속한 상속인의 시공능력은 종전 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시공능력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종전 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공사실적은 이를 합산한다.

⑥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수급인의 공사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2. 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협력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획·관리·조정한 경우

제 23 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는 별지 제18조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서류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와 건설공사실적을 증빙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성실증명서(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

-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의 (1) 또는 (2)의 서류
- (1)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2)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 다. 자기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관청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마. 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납조합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질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철강제 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 한한다)

제 24 조(시공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각 협회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수첩 또는 전문 건설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5 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 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 26 조(하도급계약통지서)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계약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제 27 조(공사일부의 하도급)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 28 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begin{aligned} &\text{기성부분에 대한} \\ &\text{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end{aligned}$$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이 수급인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제 29 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한다.
- ②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사가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 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

- | | |
|---|---|
| <p>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 급인에게 통지할 것</p> <p>3.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p> <p>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 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 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 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지 할 것</p> <p>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 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p> <p>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 을 수급인에게 통지할 것</p> <p>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 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 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 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 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p> | <p>급대금이 직접지급청구서의 접 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p> <p>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p> <p>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한 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게 통지할 것</p> <p>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p> <p>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사유가 제 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할 것</p> |
|---|---|

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 30 조(시공관리대장의 작성통보 등)

① 건설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의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시공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시공참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을 대금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 건설

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구급인 등이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 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③ 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시공한 공사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확인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시공조직도는 별표 3과 같다.

제 31 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32 조(건설공사의 표지)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내걸어야 할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별표

1종 준설공사 · 수중공사 · 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 공사기간

2. 발주자의 성명(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3.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현장감독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한한다)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준공검사자의 성명(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직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 33 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중소기업 진흥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공용하고 있을 것

제 34 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제 35 조(분쟁조정신청서 등)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 36 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제 37 조(보고서식) ①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 및 등록 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 38 조(면허 등의 수수료) 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39 조(과징금 등의 징수절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 4 조(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영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 6 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 7 조(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숭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 8 조(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제 9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제22조제1항관련)**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미만의 숫자는 빼어버린다.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인 때에는 2로 나눈 것으로 하며, 2년이상 3년 미만인 때에는 3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1/2 + \text{공제조합신용평점} \times 1/2)] \times 50 / 100$$

다만,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서 각 공제조합에의 출자의 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 \text{공제조합출자금액}) \times 50 / 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 것. 다만, 건설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율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본) ·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 / 총자본)을 각각 업계 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며,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이 “0” 이하인 때에는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 (나) (가)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로 할 것
- (다)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하는 때에는 2로 하고,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 것
- (3) 위의 산식중 각 공제조합의 신용

평점은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점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대입할 것

$$(공제조합의 신용평점 - 30) \div 35$$

- (4) 위의 산식중 공제조합출자금액은 전년도말 현재 당해 업종과 관련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총수에 당해공제조합이 평가한 자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 (5)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begin{aligned}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 &20 / 100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5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end{aligned}$$

- (1)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동종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할 것
-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영 제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공사외의 공사에 종사한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할 것
-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할 것
- 라. 위의 산식에 의한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5 /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와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3)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뺄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의 4 규정에 의한 부실별점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점수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인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뺄 수 있음

-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 “기준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이상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기준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6)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당해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 (2)에 의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제22조제2항관련)

1.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빼어버린다.

$$\begin{aligned}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 \\ &\quad \text{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 &\quad \text{신인도평가액} \end{aligned}$$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인 때에는 2로 나눈 것으로 하며, 2년이상 3년 미만인 때에는 3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begin{aligned}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 &\quad 1/2 + \text{공제조합신용평점} \times \\ &\quad 1/2)] \times 50/100 \end{aligned}$$

다만,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및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서 각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 \\ &\quad \text{공제조합출자금액}) \times \\ &\quad 50/100 \end{aligned}$$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 이 경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일 때에는 0으로 본다.
-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begin{aligned}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 \\ &\quad \text{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율평점} \\ &\quad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end{aligned}$$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본) ·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도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 / 총자본)을 각각 업계 전

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며,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때에는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 (나) (가)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로 할 것
- (다)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하는 때에는 2로 하고,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 것

(3) 위의 산식중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점은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점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대입 할 것

$$(공제조합의 신용평점 - 30) \div 35$$

(4) 위의 산식중 공제조합출자금액은 전년도말 현재 당해 업종과 관련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총수에 당해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

한 금액으로 할 것

(5)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begin{aligned} \text{기술능력평가액} = & \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 \\ & \text{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 & 20 / 100 + \text{퇴직공제불입} \\ & \text{금} \times 5 + \text{최근 3년간 기} \\ & \text{술개발투자액} \end{aligned}$$

(1)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동종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할 것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 × 5”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 영 제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에 종사한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할 것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할 것

라. 위의 산식에 의한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5 /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으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인 20년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3)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뺄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의 4정에 의한 부실별점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점수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인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뺄 수 있음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 “기준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이상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

는 금액을 빼고, 기준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뺄

(6)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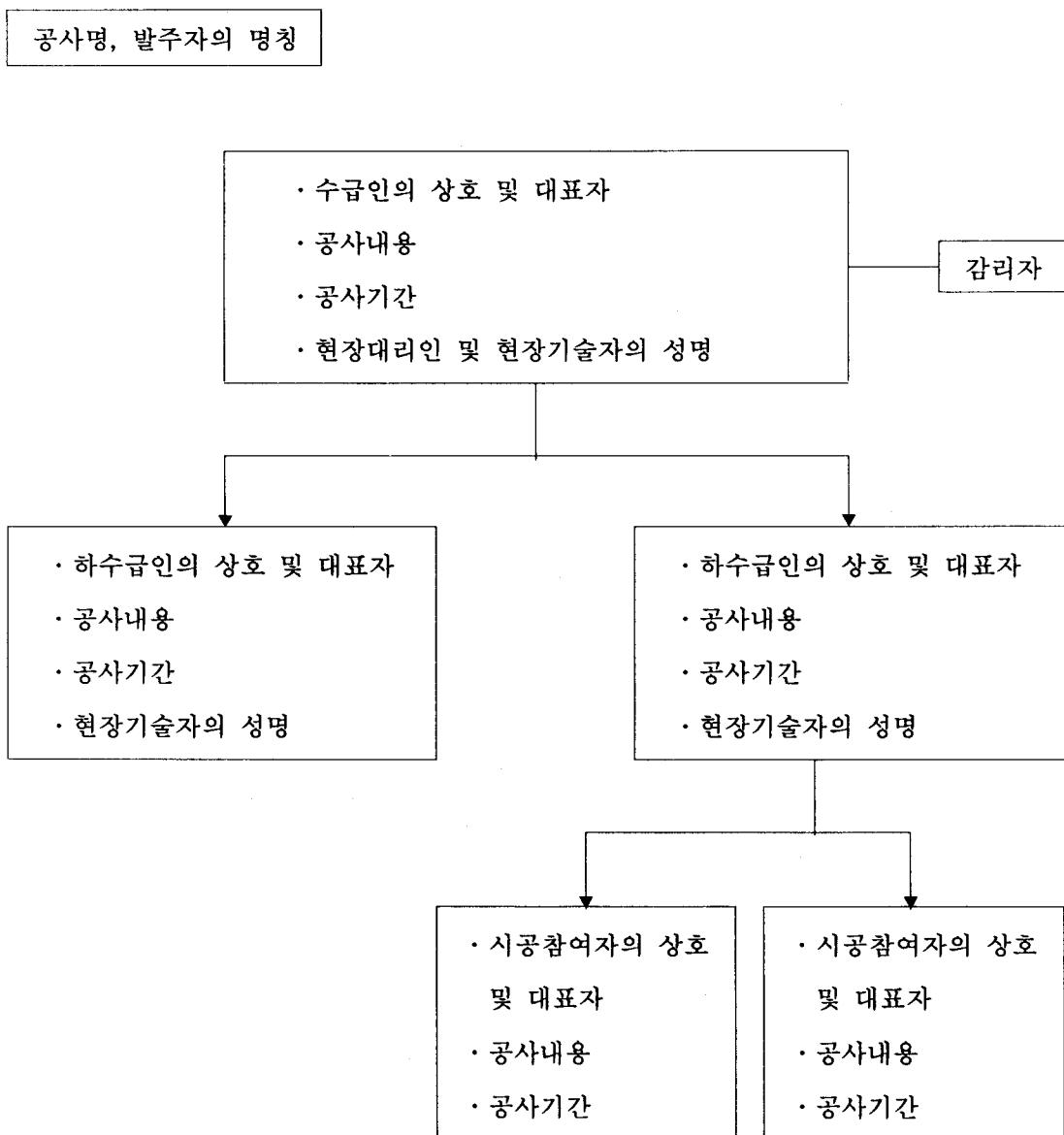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당해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 (2)에 의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시공조직도(제30조제4항관련)



[별표 4]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관련)

| | |
|---------|--|
| 공사명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현장건설기술자 | |
| 공사비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별표 5]

건설업면허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신청내용 | 수수료 |
|--------------------------------|-------|
| 1. 건설업면허 | |
| 가.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6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
| 다. 전문공사업 | 2만원 |
| 2. 건설업면허갱신 | |
| 가.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5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설비공사업 | 7만원 |
| 다. 전문공사업 | 1만5천원 |
| 3. 전문건설업등록 | 1만원 |
| 4. 건설업면허(등록)증 또는 면허(등록)수첩의 재교부 | 2천원 |
| 5. 건설업양도인가 · 법인합병인가 · 상속인가 | 2만원 |
| 6. 건설업분쟁조정 | 5만원 |